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01.01.]

1차 개정 2013.04.24.

2차 개정 2013.10.31.

3차 개정 2014.10.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② 상기 학과의 전공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이며, 평균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③ 전공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상기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되, 부득이 한 경우 전임교원의 위임을 통하여 외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상기 학과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학과에서 시행한 외국어(또는 한문)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 학기까지 논문 예비 발표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제7조(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학술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단, 2007년 이전 학번의 박사학위과정 및 외국인 박사학위과정은 제외함)

(개정 2013.4.24.)(개정 2013.10.31.)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이어야 한다.)
2. 지도교수와 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을 제외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술지 게재 인정은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전일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

제8조 (논문지도위원회) 상기 학과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지도한다. (개정 2014.10.20.)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4.24.)

부 칙(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국어학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과목 1	과목 1
과목 2	과목 2
과목 3	과목 3
과목 4	과목 4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현대문학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과목 1	과목 1
과목 2	과목 2
과목 3	과목 3
과목 4	과목 4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고전문학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과목 1	과목 1
과목 2	과목 2
과목 3	과목 3
과목 4	과목 4
과목 5	과목 5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상기 과목은 조정 가능)

[별표 2]

학술지 게재 편수 인정 목록

학술지게재 편수 인정 목록
- 연구재단 등재 국내학술지 - 연구재단 등재후보 국내학술지